

任員報酬支給規程
(임원보수지급규정)

주식회사 ○○○

임원보수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로서 회사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②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근로계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 ③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보수는 제10조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기본급여, 상여금, 성과상여금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다만,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2. "기본급여"란 직위별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3. "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이란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4. "보수총액 한도"란 정관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가 사업연도마다 정하는 전체 임원 보수의 연간 합계 한도를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결정

제4조(보수의 구성)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여, 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으로 구성한다.

제5조(보수의 결정 절차)

- ①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 한도를 결의한다. 새로운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결의한 보수총액 한도를 적용한다.

- ② 임원 개인별 기본급여는 별표의 직위별 한도와 제1항의 보수총액 한도의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사회는 개인별 보수의 결정을 대표이사 또는 특정 이사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 ⑤ 보수에 관한 결의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정족수의 계산은 상법 제368조제3항 및 제391조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보수 결정 시 고려사항)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의 직위, 담당 직무, 근속기간,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을 종합하여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주주 또는 임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수의 변경)

- ① 개인별 기본급여의 변경은 제5조의 절차에 따른다.
- ② 변경된 기본급여는 결의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지급과 계산

제8조(지급일과 지급방법)

- ① 기본급여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② 보수는 임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③ 회사는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일할계산)

- ① 월 중에 선임되거나 퇴임한 임원의 기본급여는 해당 월의 역일수를 기준으로 재임한 일수만큼 일할하여 계산한다.
- ② 월 중에 직위가 변경된 임원의 기본급여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종전 직위와 변경된 직위의 기본급여를 각각 일할하여 계산한다.

제10조(비상근임원의 보수)

- ①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하는 월정 보수 또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해당 임원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정지 등 기간의 보수)

- ① 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의 기본급여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결정 등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본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겸직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이 회사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 직위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 ② 임원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에 따라 보수를 구분하여 정하고, 같은 직무에 대하여 보수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업무수행 경비)

- ① 임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출장비, 통신비 등의 경비는 증빙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며, 이는 보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업무용 차량, 복리후생 등 임원에게 제공하는 편의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회사의 내규에 따른다.

제14조(보수의 반환)

이 규정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위반하여 보수가 지급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서류의 비치)

회사는 보수총액 한도와 개인별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이 규정의 제정·개정 연혁을 본점에 비치하고 10년간 보존한다.

제16조(규정의 개정)

- ①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 ②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부칙에 개정일과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을 적어 연혁으로 누적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사업연도의 보수총액 한도)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보수총액 한도는 이 규정을 제정한 주주총회에서 함께 결의한다.

【별표】 직위별 기본급여 한도

직위	기본급여 월 한도	기본급여 연 한도	비고
대표이사	〇〇,〇〇〇,〇〇〇원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	
사내이사	〇〇,〇〇〇,〇〇〇원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	
감사	〇,〇〇〇,〇〇〇원	〇〇,〇〇〇,〇〇〇원	
비상근임원	〇,〇〇〇,〇〇〇원	〇〇,〇〇〇,〇〇〇원	제10조

1. 위 한도는 지급 가능한 상한이며, 실제 개인별 기본급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한도와 보수총액 한도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의 한도는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하되, 기본급여와 합한 금액은 보수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정 · 개정 연혁】

구분	시행일	결의 주주총회일	주요 내용
제정	20 . . .	20 . . .	최초 제정
개정			